



시행일자 2021.07.06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어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폴스비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신청인·자금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할부 금융·대출·판토링·어음빌린·지급보증·외국환·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내수·인수·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금융회사가 제3자 외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제3조·제5조·제8조·제12조·제15조 제1항·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여신채권과 신체채권)

채무자가 발생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율과 지역별상생금)

- ① 리스료·월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융·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융은 거래계약내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의 이행을 원활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융을 변경할 수 있는 것
 - 2. 채무의 이행을 원활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융을 변형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방법 전에 국가경정 및 금융사정의 긍적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융을 일상·인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혼선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혼선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융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정한 율율·단율·율률 365일연율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자체 일수에 해당하는 지역별상생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혼선되는 한도내에서 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장 등에 따릅니다.
- ⑥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역별상생금의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황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전자마체제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로 합니다.
- ⑦ 제3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무는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황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전자마체제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 ⑧ 제7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 또는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부동물이행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 3. 채무이행 차지에 따른 득속을 위한 통지비용
- ② 제3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45조(상사법정이율)법(現. 연6.5%)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독촉비용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예산악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날전 상현수수료 및 담보대출을 위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형복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청약의 철회)

-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금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탁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 보증인은 제7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에 허용하는 연대보증인에 허용합니다.
- ② 금보증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중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 세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설정자·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 ③ 물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 ④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공정성사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선출이 가능한 경우
- ⑥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⑦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방식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의 험을 경우 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 ⑧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는 산정한 예상매각금 이하로 저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저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면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의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⑨ 담보권설정의 방법
- ⑩ 피담보자(경의)의 금액
- ⑪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금
- ⑫ 담보목적물로써 적정 범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 ⑬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면실·훼손·시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위험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위험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한 현상변경위험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는 저당권에 대한 저지권이 일련의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제3자에게 알리어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결정할 때 이와 같습니다)
- ⑭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이자·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저지해야 알리어야 합니다.
- ⑮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며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저지해야 알리어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전화 등으로 저지해야 알리어야 합니다.
- ⑯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제3자에게 알리어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이자·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저지해야 알리어야 합니다.
-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며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저지해야 알리어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전화 등으로 저지해야 알리어야 합니다.
-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한부거래변경 철회·한변권 인نا)

금융회사는 한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한부철회·한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할부금지정서 관련 서류(전자전자적·전자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한변권이 제3자에게 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여 그에 관한 증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확인언어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특권,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은 기내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로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에 경과하여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로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체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언어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챈권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그 사전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증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증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증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현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전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언어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로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증권인 할인장을 판매하는 경우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적용경우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월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현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한가천전 체계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향이 있는 때에는 그 정향에 따라입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다른 아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증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증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혹은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첨부하고 추첨 또는 저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증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율을 상환할 책임을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증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업기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밀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를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일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업기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정한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점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쟁이나 저분의 난이, 변제기의 정단, 할인여부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표시하고, 금융회사는 면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제17조를 제외하고 제2항에 따라 미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2항의 상계에 의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책임조항)

① 채무자는 발행·배포·판매·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세 증서 등이 불가원령·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점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새우를 확정한 후 갱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조와의 차례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세 증서 등의 인명·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다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아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 같은 바입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자제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자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예산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러 할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에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체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부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시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 재산·부채현황·경영·업무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부업·업무 기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 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차권회수 불능이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사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전화·전자우편(E-MAIL)·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7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 한도·여신기기·의금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기기·의금·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9조 제11항에 따른 기한전의 일의상환 수수료는 연체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기기 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훈련되었거나 인정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여신한도·여신기기·의금·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서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기·제조·부동산 등 여신기관에 대리로 개인인 경우 :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권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차입금리가 적용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자에게 대리로 개인인 경우 :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회사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자에게 대리로 개인인 경우 : 신용상태 개선이 미치지 않은 경우

⑤ 금융회사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자에게 대리로 개인인 경우 : 차입금리가 미지정인 경우

⑥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구·신청·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상품설명서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자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 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수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수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1. 법령·경장·제도·개선·약관·변경권·영령 등으로 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경장·제도·개선·약관·변경권·영령 등으로 약관을 변경한 경우
3. 변경·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제1항의 개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 서면·전자우편(E-MAIL)·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의 흥미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예산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율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업점 소재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서류로 부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챈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챈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율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② 일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불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불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